

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

심사보고서

2020. 6. 25.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: 2020년 5월 26일

○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: 2020년 6월 15일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: 2020년 6월 22일

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(2020. 6. 22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■ 제안설명자: 건설관리과장 김동수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.

나. 제출내역

-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3. 주요내용

가. 설치목적

- 관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에게 자립기회 마련 및 생존권 보장
- 지원을 통한 거리가게 정비로 구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

나. 재원조성

- 일시도로점용료(도로법 제66조,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8호에 따라 부과되는 점용료)
- 적치물 및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
(도로법 제72조,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7호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)
-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
(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, 제2호에 따른 과태료)

다. 기금용도

-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철거 및 정비되거나 자진 정비한 운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
- 거리가게 운영자 소양교육 및 전업을 위한 재취업 교육 지원비
-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거리가게 시설 개보수비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안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6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(원안 의결)를 거쳐,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음.
- 지난 2019년 12월 26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동 기금 운용 계획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는 바,

-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용도 등 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에 어긋나는 바가 없어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,
-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거리가게 허가제는 규제행정 측면인 ‘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의 확보’와 지원행정 측면인 ‘생계형 노점상 영업의 정당화 및 보호’라는 서로 상충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목표가 존재하는데, 동 기금의 운용으로 이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운용되어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사항: 없음

※ 참고자료: 관계 법령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388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제3조(기금의 설치 제한)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7조(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)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
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 다만,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,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·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2(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
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본조 신설 2015. 7. 24.]